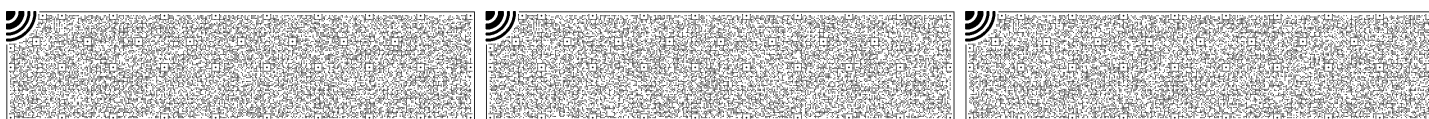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246호

의 안 명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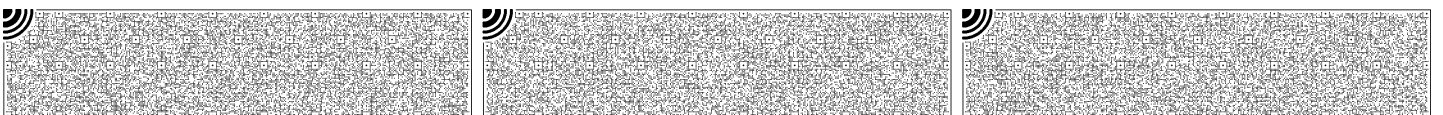
의 결 일 2026. 7. 6.

주 문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
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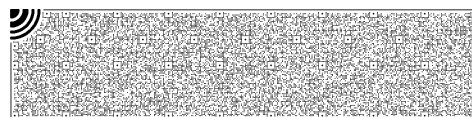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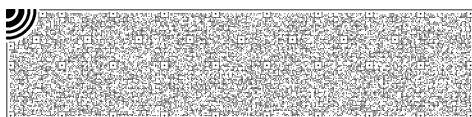
[별 지]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

202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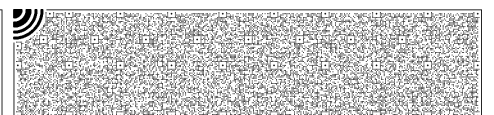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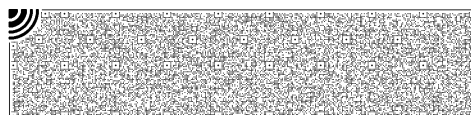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일반 현황	2
III. 현황 및 문제점	4
1. 주소지 관할 중심 인감변경신고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 발생	4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현장 미정착	6
IV. 개선 방안	9
1. 인감변경신고 접수처의 전국 확대	9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활성화	10
V. 조치사항 및 기한	11



I.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래 부동산·금융 거래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공적 증명 수단**으로 기능
 - 현재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도록 행정망이 구축되어 있고, 연간 약 3,000만 건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안착
 - 그러나 인감도장의 분실·마멸 등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지속
 - 실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직장인·학생 등은 단순 변경신고 업무를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시간·교통비 부담뿐만 아니라 휴가 조퇴 등 기회비용까지 발생
- [민원사례] 인감도장을 분실했고 지금 타지역에 나와 있음. 현재 인감도장이 필요 한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만 변경할 수 있어 너무 불편함(국민신문고, '21.6월)
- 한편, 인감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관행적 인감 선호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일부 수요기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요구
- [민원사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더니 금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 하여 인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았음(국민신문고, '24.10월)
- 특히,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터넷 발급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스템 활용 절차가 복잡하고 기관별 처리 절차 안내 부족 등으로 현장 활용에 한계
- 이에 인감증명서 이용 불편을 완화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적 증명제도의 편의성과 신뢰성 제고 필요

Ⅱ. 일반 현황

□ 인감증명제도

- (개념) 인감증명제도는 본인이 사전에 신고한 인감과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된 인영(印影)이 동일함을 행정기관이 증명하여 본인 확인과 거래 안전을 도모하는 제도 (근거 법령 : 「인감증명법」)
 -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인감은 인감대장에 등록·관리
 - * 읍·면·동 주민센터(일부는 출장소)
- (관리) 현행 인감증명 관리체계는 증명청과 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운영
 - 인감의 신고·변경·말소·부활 등 인감대장 관리 업무는 증명청이 수행,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등에서 처리 가능
 - ※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고된 인감 여부와 용도 등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교부(대리 발급 가능)
 - 인감대장은 전산 대장과 수기 인감대장을 병행 관리하고 있으며, 주소 변경 등으로 관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출지 증명청에서 전입지 증명청으로 인감대장을 이송하여 관리
 - ※ 인감대장은 영구보존 성격의 공부(公簿)로, 인감 관련 사고 발생 시 인영 확인과 문서 감정 등에 활용될 수 있어 대장관리 책임이 중요
- (변경 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등의 사유로 기존 신고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밎아야 하는 절차
 - 신고인 본인이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새로운 인감을 제출, 신분증 확인 및 필요한 경우 무인(拇印) 등 전자적 방법으로 본인 여부 확인
 - ※ 질병·수감·해외체류 등 직접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위임 등 요건을 충족하면 서면신고 가능
 - 수리되면 전산 및 수기 인감대장에 변경 사항을 정리하고 관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개념)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근거 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제출과 서명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고, 기관이 서명 사실과 용도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인터넷 발급시스템에서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으로 확인하여 발급시스템에 저장되는 전자문서

- (발급·확인 절차)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서 신청해야 하며,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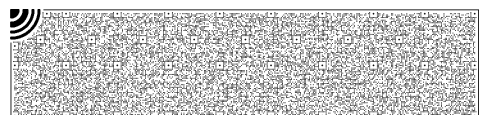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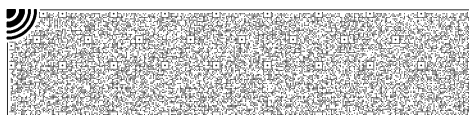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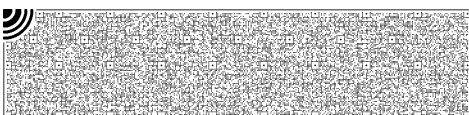
구분	발급 절차	비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①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②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서명사전등록 불필요) ③ 용도 등 기재 사항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
전자본인 서명확인서	① 읍·면·동 등에서 사전 이용 승인 신청(서명사전등록) ② 온라인 발급시스템(정부24) 접속 → 본인 확인 ③ 용도, 제출기관 등 기재 사항 입력 ④ 전자서명 → 발급시스템에 저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요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발급증의 발급 번호, 성명 등을 통해 발급시스템**에서 발급 사실 확인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특수법인 등

** 수요기관은 발급증을 토대로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망에 접속해 확인 가능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요기관 확인 절차 >



Ⅲ. 현황 및 문제점

1 주소지 관할 중심 인감변경신고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 발생

현황

- 인감변경신고는 매년 약 100만 건 이상 신청·처리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민원

< 인감변경신고 처리 현황 (국민권익위 실태조사¹⁾, '26.2월) >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처리 건수(건)	3,059,237	1,021,785	1,028,735	1,008,717

- 인감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인감변경신고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주소지 관할 증명청에서만 처리 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신고, 여권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 주요 생활민원의 접수·처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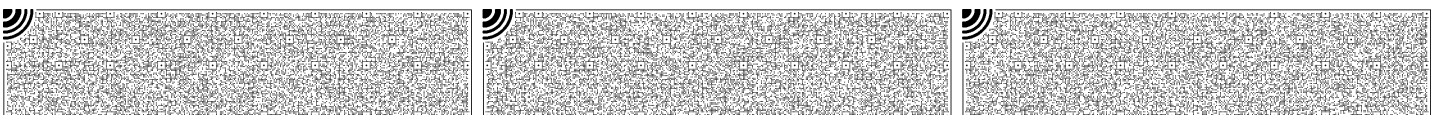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민원업무 현황 (정부24 기준, '26년) >

민원·업무	신청명	접수기관
주민등록증	신규, 재발급	전국 읍·면·동
가족관계신고	출생, 혼인, 이혼, 사망, 개명, 입양 등	전국 시·군·구, 읍·면
여권	신규, 재발급	전국 시·군·구
운전면허증	신규, 재발급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인감증명서 발급	-	전국 시·군·구, 읍·면·동

문제점

- 인감도장을 분실·마멸하였거나 긴급한 거래를 위해 인감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민은 실제 거주지·근무지·체류지와 관계없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1)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자료 요청 및 취합 결과(4개 지자체 미제출)로, 읍·면·동 현장 담당자 응답 3,517건 분석. 이하 같음



- **[설문조사]**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인감증명 이용자 중 42%가 '도장 분실 시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여 재등록해야 하는 점'을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으며, 인감도장 제작·관리의 번거로움(41%)이 그 뒤를 이었음('26.4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특히 전입 예정자, 장기 출장자, 타 지역 근무자, 긴급한 부동산·금융거래 당사자의 경우 인감변경 지연으로 거래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약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상 불편을 넘어 실질적인 재산상·거래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

▪ **[민원사례]** 인감변경신고 관련 행정처리 불편

타 지역 체류 중 인감도장 분실로 인감변경이 필요하나, 인감증명서는 전국 발급이 가능함에도 인감변경신고는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해 불편 (국민신문고, '21.6.14.)

- 주소지 관할 중심의 인감변경신고 절차는 국민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서비스 이용 방식이 달라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인감정보 전산화와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신분증·무인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처리 가능한 환경임에도 대면 방문이 필수적인 인감변경 신고를 '주소지 관할'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 편의성을 크게 저해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6.2월), 읍·면·동 현장에서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 인감변경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77.2%로 나타남

- **[설문조사]**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인감변경신고의 전국 확대 시 이용 의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91%(매우 찬성 56%, 찬성 35%)가 긍정적으로 답변('26.4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지자체 의견]**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주민전산시스템으로 관할 등에 인영·지문 정보 등 변경 신청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하자고 제안

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현장 미정착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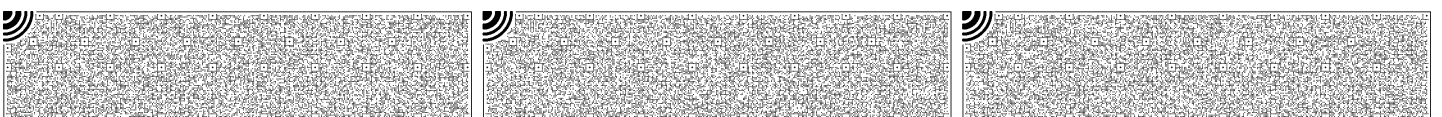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로, 법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 등의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발급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사전 이용승인 후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부동산·금융 등 일부 수요기관에서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용에 소극적
 - 실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율은 인감증명서 대비 '22년 5.6%, '23년 6.3%, '24년 6.7% 수준에 그치는 등 활용이 미미한 실정
 -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국민 다수가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이용하고 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의 실질적 대체 수단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

<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현황²⁾ (단위 : 건,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인감증명서	30,749,261	29,835,740	29,845,45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729,229	1,880,066	1,990,901
인감 대비 확인서 발급 비율	5.6	6.3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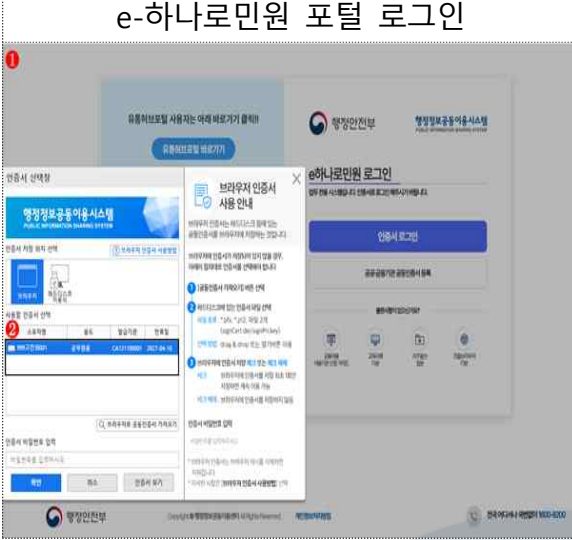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민원인이 정부24에서 발급증을 출력한 후 이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수요기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인 e-하나로민원에서 발급 사실을 확인
 - 수요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을 위해서는 사전에 열람 권한 신청, 사용 환경 등록, 발급 사실 확인 등 선행 절차 필요

2) 출처 : 행정안전통계연보(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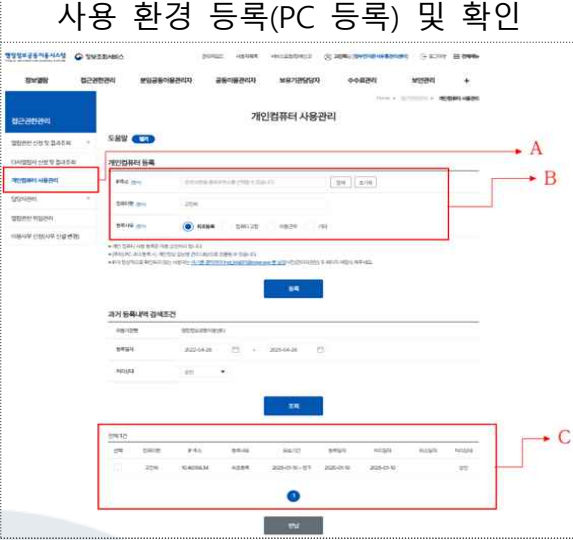


< e-하나로민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절차(행정안전부, '25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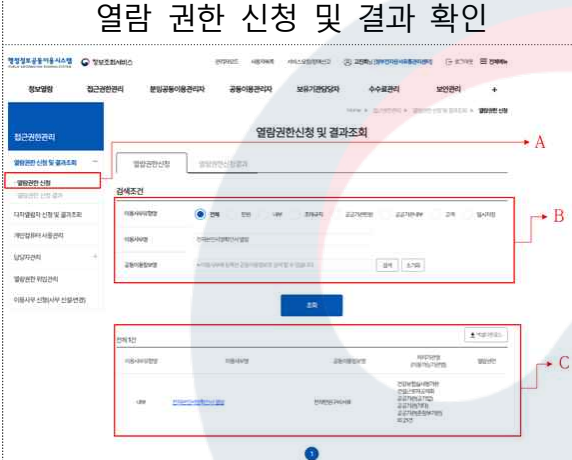
e-하나로민원 포털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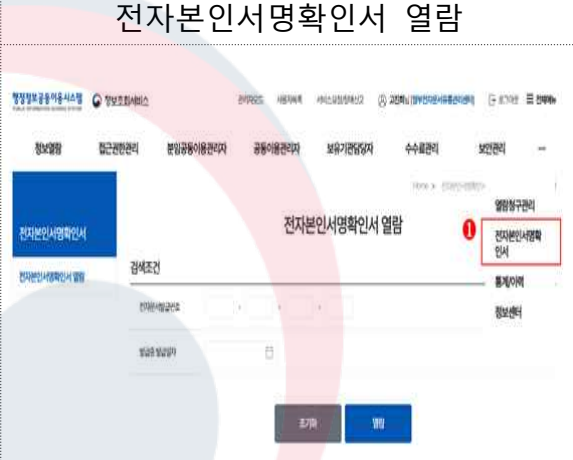
사용 환경 등록(PC 등록) 및 확인



열람 권한 신청 및 결과 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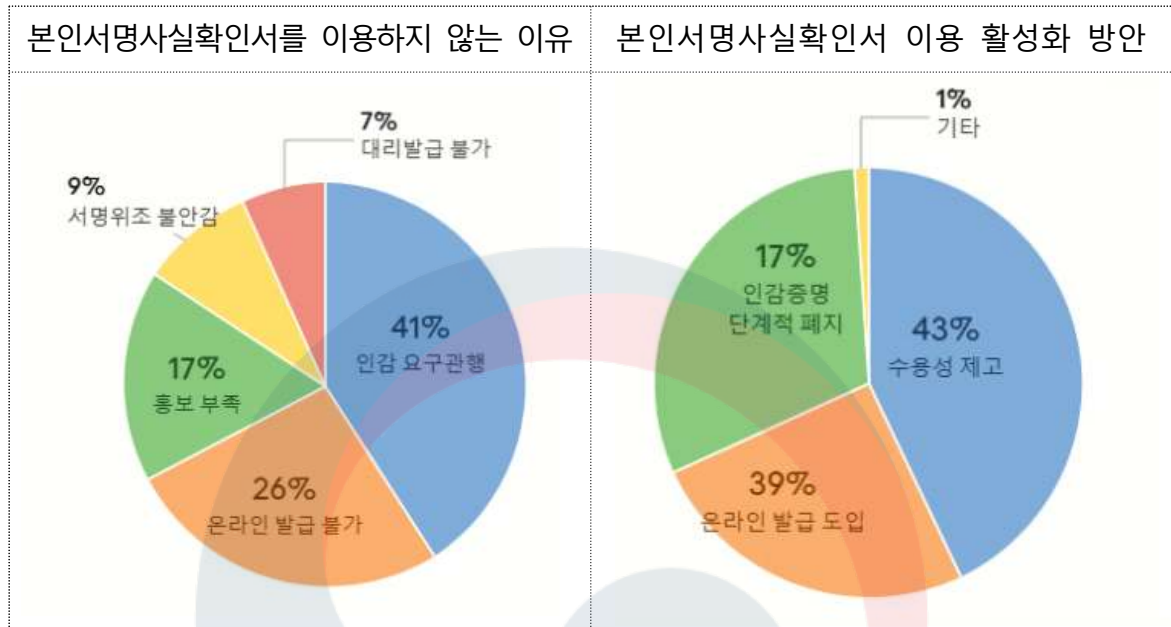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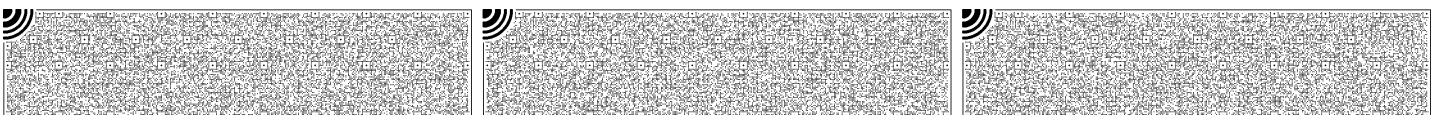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에도 일부 수요기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함에 따라 국민이 다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26.2월)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수요기관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응답이 48.2%로 나타남
 - 이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 자체보다는 수요기관의 인식, 처리 관행이 제도 활용을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줌

- **[설문조사]** 국민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은행·등기소 등 수요처에서 여전히 인감을 요구(41%)'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수요처의 수용성 제고(43%)'가 제시되었음 ('26.4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26.4월) >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요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e-하나로민원 이용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업무처리에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
- 열람 권한 신청, 사용 환경 등록, 발급증 확인 등 구체적인 절차가 매뉴얼에 미비하여, 수요기관 담당자가 확인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용을 기피할 우려 상존



IV. 개선 방안

1 인감변경신고 접수처의 전국 확대

- 현행 주소지 관할 증명청 중심의 인감변경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을 확인받는 경우 주소지 외의 다른 증명청에서도 접수·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확대

⇒ 「인감증명법」 개정

현 행	개 선 (예시)
·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만 인감변경 신고 가능	· 본인 방문 신고 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 외의 다른 증명청(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인감변경신고 가능하도록 운영 범위 확대

< 인감증명법 (예시) >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분을 확인받고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 외에 다른 증명청(읍·면·동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도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전국 읍·면·동 및 출장소에 보관된 수기 인감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 접수·처리 가능하도록 관리기반 마련
- 인감대장 전산화 대상, 시스템 구축 방식, 기관 간 연계 방안, 보안 관리 방안,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ISP) 용역 수행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수기 인감대장의 등록·변경·정정 이력 등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

- 인감변경신고 완료 후 본인 희망 시(알림 수신 동의 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처리 결과를 즉시 통보하는 알림 체계 마련
- 인감변경 최종 완료 즉시 처리 사실을 안내하여 타인에 의한 무단 변경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 편의성 제고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선 (예시)
▸ 해당 내용 없음	→ ▸ 인감변경신고 완료 후 본인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처리 결과 즉시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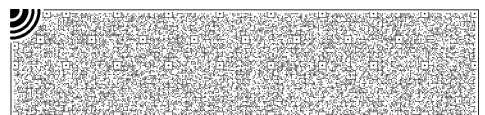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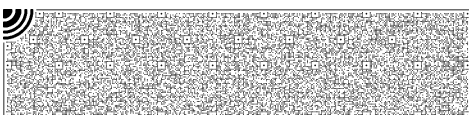
제00조(인감변경신고 처리 결과의 통보) ① 접수증명청은 인감변경신고에 따른 인감대장 정리가 완료된 경우 본인이 미리 동의한 때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활성화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인감증명서 수요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요기관 이용 절차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반영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e-하나로민원 시스템의 열람권한 신청, 사용자 컴퓨터 등록, 발급증 확인 및 열람 처리 등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단계별 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확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접수를 기피하거나 반려할 우려 해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 개정

현 행	개 선 (예시)
▸ 해당 절차 안내 없음	→ ▸ e-하나로민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인 절차 신설 - e-하나로민원 로그인 및 컴퓨터 등록·확인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열람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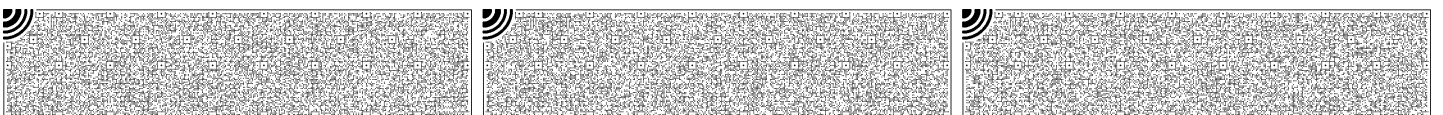


V. 조치사항 및 기한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1. 인감변경신고 접수처의 전국 확대	○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분을 확인받고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주소지 관할 증명청 외의 다른 증명청에서도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인감증명법」 개정 ○ 전국 읍·면·동 및 출장소에 보관 중인 수기 인감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기반 마련 ⇒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수기 인감대장의 등록·변경·정정 이력 등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 ○ 인감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본인에게 처리 완료 사실을 즉시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2.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이용 활성화	○ 수요기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확인을 위한 e-하나로민원 시스템 열람권한 신청, 컴퓨터 등록, 발급증 확인 및 열람 처리 등 세부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 - 수요기관 담당자가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처리절차 등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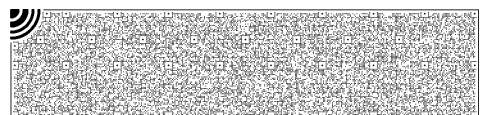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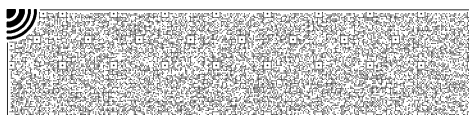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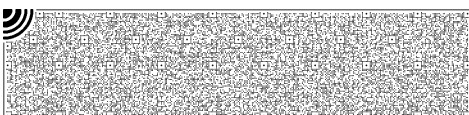
□ 조치기한 : 2028.12월



붙임 1

인감증명서 등 발급절차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① 사전 절차	• 인감등록 사전신고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사전 이용신청
② 신청 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③ 신청 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온라인 발급
④ 본인 확인	• 신분증·무인 등	• 신분증·무인 등	• 발급비밀번호,공인 인증서 등
⑤ 확인 방법 (날인 및 서명)	• 인감 날인	• 본인 자필 서명	• 전자서명
⑥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⑦ 발급 형태	• 문서형태로 발급	• 문서형태로 발급	• 전자문서 발급 (시스템 내 저장)
⑧ 제출 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⑨ 수요기관의 확인 방법	• 인영비교 제출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 고려 확인 ※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상 확인
⑩ 수수료	• 600원	• '28.12.31.까지 무료	• 무료
⑪ 시행일	• 1914. 7. 7.	• 2012. 12. 1.	• 2013. 8. 2.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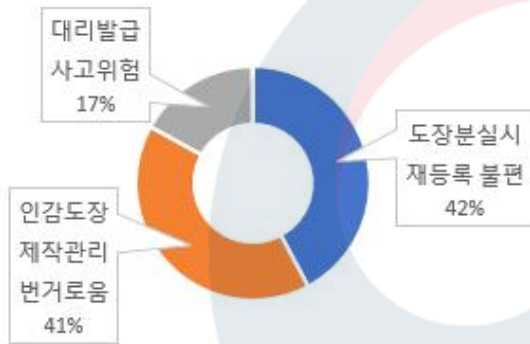
‘인감과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

- ◇ 조사목적: 인감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한 인식 및 개선의견 수렴
 ◇ 조사기간: 2026. 4. 22. ~ 5. 6.(15일간)
 ◇ 조사방식: 구조화된 객관식 및 주관식 설문 문항, 자유의견(댓글) 병행
 - 설문: 총 1,176명(일반국민) - 댓글: 총 46명

□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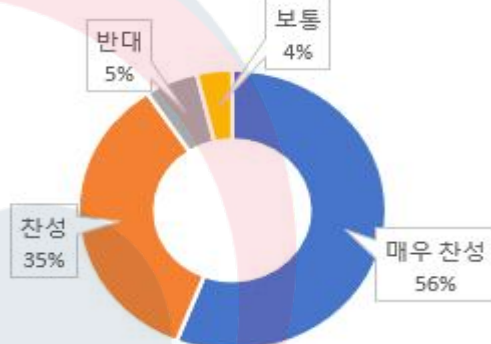
[1] 인감증명 불편한 점

- 42%가 도장 분실 시 주민센터 방문 재등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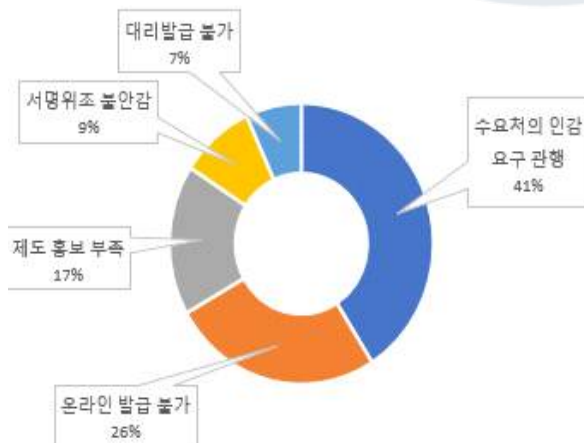
[2] 인감변경 전국기능 이용 의향

- 91%가 인감변경을 전국 가능으로 개선되면 편의성 향상된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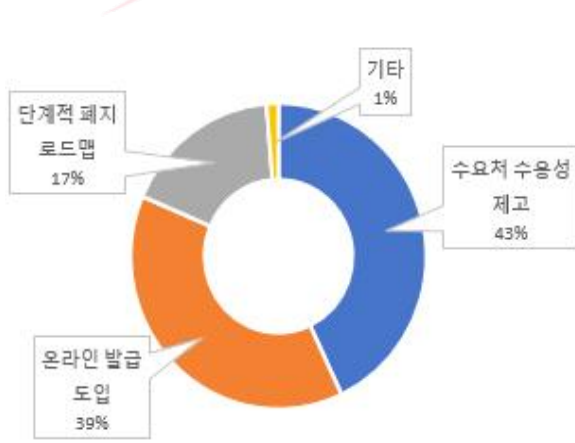
[3] 본인서명 미이용 주된 이유

- 41%가 은행·등기소 등에서 인감 요구로 답변



[4] 본인서명 활성화 개선책

- 43%가 은행·등기소 등의 수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변



□ 설문내용 분석

(질문1) '인감증명서'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 발급 여부

- '인감증명서만 발급' 받았다는 응답자가 38.5%(453명)로 가장 많았고, '둘 다 발급'이 23.6%(277명), '본인서명만 발급'이 19.6%(230명), '발급받은 적 없음'이 18.4%(216명)로 답변

- 여전히 인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질문2) 인감증명 제도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사항(중복 응답)

- '도장 분실 시 주민센터 재방문 불편'이 42%(713명)로 가장 많았고, 인감 도장 제작 관리의 번거로움이 41%(690명), 대리 발급에 따른 부정·사고 위험 불안이 17%(285명)로 답변

- 인감변경 신고 시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불편함으로 나타남

(질문3) '인감변경신고'를 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전국 가능으로 개선한다면 이용 여부

- '매우 찬성'이 56%(657명)로 가장 많았고, '찬성'이 35%(409명), '반대'가 5%(66명), '보통'이 4%(44명)로 답변

- 편의성 향상에서 찬성이 많으나, 보안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질문4) 본인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알고 있는지

-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이 49.6%(583명)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 알고 있음'이 26.1%(307명), '들어 본 적 있음' 17.2%(202명), '전혀 모름' 7.1%(84명)로 답변

- 본인서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5) 본인서명을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은행·등기소 등 수요처에서 여전히 인감을 요구'가 41%(482명)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발급이 안돼서' 26%(303명), '제도 자체가 홍보가 부족해서' 17%(204명), '서명위조 불안감'이 9%(107명), '대리발급이 안돼서' 7%(80명)로 답변

- 본인서명 이용을 위해서는 수요처의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6) 본인서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책

- '은행·등기소 등 수용성 제고'가 43%(506명)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발급'이 39%(452명), '인감증명서 단계적 폐지 로드맵 수립'이 17%(204명)로 답변

- 수요처의 수용성 제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질문7) 인감증명 관련 불편한 점 및 본인서명 활성화 의견

- 발급절차 간소화, 온라인·모바일 발급 확대, 활용기관 수용성 제고, 대국민 홍보 강화 등 방안 제시

- 총 1,176개의 응답 가운데 668건 의견(508건은 실질 의견으로 보기 어려움)

항목	발급절차 간소화·접근성	온라인·모바일 발급확대	수요처·사용처 확대	홍보·인식 개선	제도개선 인감폐지·통합	보안·개인 정보 처벌강화	인센티브·수수료 혜택	기타
의견수 (건)	212	141	80	76	47	26	7	79

[주관식 응답] ‘인감증명 불편한 점과 본인서명사실확인 활성화 방안’ 주요 응답

▶ (주요 의견)

- 인감증명은 주민센터 방문, 도장 제작·보관, 분실 시 재등록 등 이용 과정의 불편이 크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온라인·모바일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간편인증·모바일 신분증 등과 연계하여 시간·장소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 금융기관, 부동산 거래, 법원, 자동차 매매 등 주요 수요처에서 여전히 인감 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동일 효력 안내와 수용성 제고가 필요
- 제도 자체를 모르는 국민이 많고, 알더라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SNS·유튜브·공익광고·민원창구 안내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
- 인감증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병존으로 제도 선택이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인감 중심 관행을 줄이고 서명 기반 확인제도로 전환·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온라인화 확대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 위조·도용 방지, 부정발급 처벌 강화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제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도 확산을 위해 발급 수수료 인하·한시적 면제, 활용기관 인센티브 등 국민과 수요처가 전환을 체감할 수 있는 유인책 검토 필요

참고

관련 법령

□ 「인감증명법」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는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捺印)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①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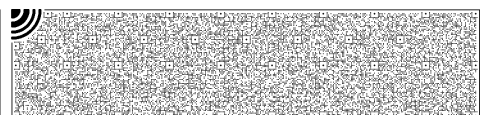
② ~ ⑥ (생략)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捺印)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인감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증명서 발급 : 통당 600원
2. 인감변경신고 : 회당 600원
- ② (생략)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감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등에 제5항에 따른 발급증을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대행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관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 ② ~ ⑨ (생략)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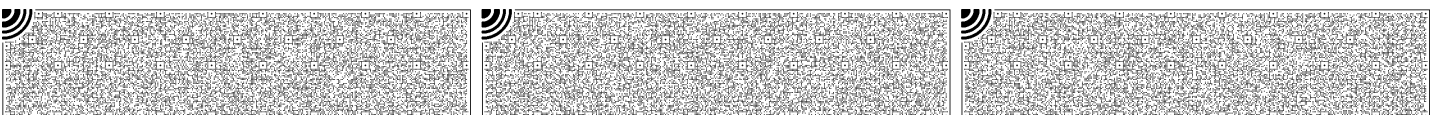
-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발급기관(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③ (생략)

제6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



인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의 구축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④ ~ ⑧ (생략)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7월 6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신 대 희

위 원 최 진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홍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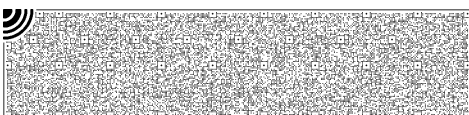
위 원 이 태 한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정 본 입 니 다 .

2026. 7. 6.

국 민 권 익 위 원

